

심 사 보 고 서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77
----------	-----

2018. 3. 22.(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3월 22일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소방본부장 권대윤)

가. 제안이유

-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의 소방차량 주차공간 증축을 위해 도유지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여 영구시설물(차고)을 축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유(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 대 상 : 토지(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60-9번지 2,734㎡중 일부-50㎡)
- 토지가액 : 2백13만원 (42,700원/㎡)
- 사용기관 : 옥천군
- 동의내역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옥천소방서 소방차고 증축)
- 적용시기 : 2018. 4. 1. 부터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정일하)

가. 본 동의안은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차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도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 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소방차고 증축으로 주차면이 증가되면 각종 센서를 탑재한 소방차량과 향후 도입예정인 소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상시 출동태세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사업계획」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사업계획

소방차량 보강계획에 따른 차고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
의 어려움이 있어 차고 증축을 통한 차고지 확보로 출동대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신규 소방차량 보강 및 기존 배치된 차량의 차고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 어려움 발생.
- 소방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고 공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II 추진근거

- 소방력 기준에 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III 현 청사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대책

- 現 청사 현황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소유자 - 옥천군수)
 - 구 조 : 양식 철근 콘크리트조 1/3층
 - 건축연도 : 2001년도(건축면적-478.73㎡, 연면적 - 887.94㎡)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기존의 차고공간 부족으로 소방차량 실외주차(9대)
 - 기존 차고 소방차량 주차대수 - 5대(구급1, 펌프1, 탱크1, 화학1, 고가1)
 - 실외주차 차량 - 9대 (화재조사차1, 장비운반차1, 예비구급차1, 구조버스1, 순찰차1, 기타4)
 - (개선대책) 기존 차고활용 전면출구 방식에서 양면출구 방식으로 차고증축
 - 증축차고 소방차량 주차대수 - 총 10대(5대 증가)
 - 증축차고 면적 - 196.7㎡
 - 증축차고 주차계획(5대)- 대형펌프차 1, 구급차 1, 굴절사다리차 1, 조연차 1, 소형사다리차 1.

IV 사업계획

- 사업위치 :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외1필지)
- 사업기간 : 2018년도
- 사업방법 : 충청북도 지방보조사업 추진 (*추가경정예산 반영)
- 총사업량 :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1식(증축면적 196.7㎡-건폐율 12.56㎡, 용적율 30.36㎡)
(※ 증축차고 196.7㎡ + 기존차고 307.5㎡ = 504.20㎡)
↳ 공유지(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146.7㎡), 도유지 (옥천읍 문정리 260-9번지 -50.0㎡)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 사업비 : 444,000 천원 소요예산

- 건축공사 : 412,500천원
- 설계비 : 22,440천원
- 감리비 : 5,621천원
- 시설부대비 : 2,700천원

- 사업개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별표 1 참조)

건축규모 (증축)	구조	건축비(단위 : 천원)			비고
		계	도비(40%)	군비(60%)	
196.7㎡	철근콘크리트	444,000	177,600	266,400	설계,감리, 토목 등 포함

V 그간의 추진상황

-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계획(안 검토요청(2018.01.09.-옥천군청)
→ 본 사업이 충청북도 지방보조사업(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
-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 계획(안 검토결과 알림(옥천군 안전총괄과-2018.01.29)
→ 옥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8.02월), 옥천군 제1회 추경경정예산 반영(2018.03월)

VI 관련사진 및 도면(위치도, 배치도)



기존차고

노숙차량

차고증축 계획안

설계도면

첨부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 증축관련 위치도(문정리 439, 260-9)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7.>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